#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98 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정필모·이용빈·유정주

한준호 • 이학영 • 신영대

변재일 • 허 영 • 박광온

오영환 · 김성주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「방송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.

그런데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경우 통신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,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(안 제10조의4제3호).

법률 제 호

##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4제3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는 제10 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4(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	제10조의4(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
의 결격사유) 법인의 대표자가	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	
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	3
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	
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	
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	
날부터 <u>2년</u> 이 지나지 아니한	<u>3년</u>
자	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